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서울청정 맑음!
서울교육 밝음!

2026년 오류고등학교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2026. 8.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1. 감사배경 및 목적

- 2026년도 자체감사 계획(감사관-20883, 2025. 12. 31.)
- 2026년 사립학교(법인) 종합감사 추진계획(감사관-1535, 2026. 1. 30.)
- 2026년 상반기 사립학교(법인) 종합감사 실시 통보(감사관-2214, 2026. 2. 11.)
-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적법·타당성 등 점검, 책무성 및 투명성 강화
- 각종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대안 제시로 학교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감사 대상기관: 오류고등학교
- 감사범위: 2023. 3. 1. ~ 2026. 감사일 현재 기간 동안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 중점

- 학교회계(예·결산 및 세출)
- 학교발전기금 및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학사(성적관리, 생활교육, 학교생활기록부)
- 교직원 인사관리(채용 전형,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 계약(물품, 용역, 공사) 및 물품·재산관리
- 세입(전입금, 수익자부담수입 등), 세입·세출외현금
- 교직원 복무 관리
- 급여(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 감사처분 시정 요구사항 이행 여부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26. 4. 1.(수) ~ 4. 3.(금) [3일간]
- 감사인원: 감사단장 외 6명

5. 처분사항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참고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 번호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 교원 채용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오류고등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오류고등학교에서는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교원의 결원 보충 및 휴직자 대체를 위한 기간제 교원을 매년 채용·임용하고 있다.

2.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기간제 교원을 채용할 때에는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서울시교육청, 매년 발행)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주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 ②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5조(채용금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및 제54조의4(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 따라 기간제교원 채용 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기간제 포함 교원 경력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제출 가능) 및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 ③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및 제54조의4(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은 기간제교원을 채용하거나 동일학교 연장 계약 시(1년이 경과한 경우) 결격사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오류고등학교에서는 2023학년도부터 2026학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기간제교원 71명을 채용하면서 [표] 와 같이 ①계약서 미작성(지연 포함) 18건, ②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미징구 37건, ③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 미징구 37건, ④결격사유·성범죄·아동학대관련 범죄 미조회(1년 경과 포함) 48건 등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기간제교원 채용 서류 구비 부적정 처리 내역

(단위: 명, 건)

학년도	기간제 채용인원	계약서 미작성 및 지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¹⁾ 미징구	마약류중독 여부 미징구 * 2023. 4. 19. 시행	결격사유,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2023	18	8	11	-	9
2024	18	7	7	13	13
2025	19	-	10	13	13
2026	16	3	9	11	13
합계	71	18	37	37	48

※ 자료: 오류고등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오류고등학교장은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및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간제교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및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검사결과 통보서(또는 진단서) 징구, 결격사유 및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등 필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2026학년도 기간제교원 임용자에 대해 누락된 서류를 구비하여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인권학원 이사장은

이 건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서류의 징구 기준에 대해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적용 기준이 매년 개정되었으므로, 각 연도별 적용 지침을 기준으로 제출서류 미징구 건수를 산정함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관 주 의

제 목 예·결산 편성 및 운용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오류고등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오류고등학교에서는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지침」 등에 따라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월금 처리, 예·결산 공시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2. 세출예산편성 업무 부적정

가.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및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에 따라, 학교는 학교 교육계획과 연계하되 전년도 예산 및 결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재정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 내용에 맞게 세출예산 과목을

구분하고 정당한 원가통계비목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집행 시에도 지출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과목을 선택하여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 및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지침」에 따라 예산 확정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식 절차인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사결정을 거치는 등 예산 심의 기구의 검토를 거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오류고등학교에서는 [표 1] 과 같이 예산 확정 후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정식 절차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지 않고 총 44건에 대하여 세부항목내 혹은 세부항목간 금액을 증감하여 금83,258,000원을 임의 조정한 사실이 있다. 이는 최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이며, 이로 인해 조정된 금액이 예산 현액으로 관리되어 해당 사업 예산이 당초 편성 계획과 다르게 운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2023~2026학년도 예산 세부항목내(간) 금액 조정 내역

(단위: 건, 천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예산	세부항목내	18	36,459	6	5,642	16	26,001	-	-	40	68,102
세부항목내(간)	세부항목간	1	1,942	2	11,214	-	-	1	2,000	4	15,156
금액 조정 내역	합계	19	38,401	8	16,856	16	26,001	1	2,000	44	83,258

※ 자료: 오류고등학교 제출자료 및 업무관리시스템(K-에듀파인) 자료 재구성

3. 이월금 처리 부적정

가.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및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지침」(서울시교육청, 매년 발행)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장은 예산 편성 시에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해 명시이월비 명세서를 첨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제출해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집행이 끝난 목적사업비를 다음 연도에 반납하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세입예산 편성 후 반환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오류고등학교에서는 [표 2]와 같이 지출이 완료되어 명시이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2024학년도 화장실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금80,337,860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여 반환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과정에서도 2025학년도 본예산 편성시 명시이월비 명세서를 첨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다음 학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보고한 사실이 있다.

[표 2] 이월금 처리 부적정 내역

(단위: 원)

연도	세부사업	건명	명시이월금액	2025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		비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O,X)	이사회 의결 여부(O,X)	
2024	[교육청]교사동 및 강당화장실개선	2024년 시설사업비-화장실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80,337,860	X	X	1차 추경 시 보고 (2025.12.29.)

※ 자료: 오류고등학교 제출자료 및 업무관리시스템(K-에듀파인) 자료 재구성

4. 학교회계 예·결산 공시 지연

가.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사립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사립학교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 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에 따라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 및 결산을 공시함에 있어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오류고등학교에서는 [표 3]과 같이 2023학년도부터 2026. 4. 감사일 현재까지 예산서는 2024학년도 13일, 2025학년도 17일 지연하여 공개하였고 결산서는 2024학년도 46일 지연하는 등 예·결산 공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3] 2023~2026학년도 예·결산 공시 지연 내역

(단위: 원)

구분		법적 공시 기한	지연 일자			
			2023	2024	2025	2026
학교홈페이지 공시 일자	본예산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	2023-02-17	2024-03-08 (13일 지연)	2025-03-13 (17일 지연)	2026-02-24
	결산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2024-04-23	2025-07-16 (46일 지연)	-	-

※ 자료: 오류고등학교 제출자료 및 학교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오류고등학교장은

- ① 앞으로는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예산을 운용하고, 이월금 처리 시 대상 경비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정한 이월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예·결산 편성 시 공시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예·결산 편성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건 관련으로 “기관주의” 처분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관 주 의

제 목 수익자부담경비 사업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오류고등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오류고등학교에서는 2023년도부터 2026년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지침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 사업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2. 수익자부담경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부적정

가.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을 심의하고 동법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을 심의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에 따르면 ‘교복·졸업앨범·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은 부담의 주체인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기와 장소, 운영 형태, 비용의 검토 및 책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 시에는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운영 방식,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별 운영계획, 수강료, 수강 정원, 환불 규정, 강사 선정 계획, 홍보 및 평가 계획, 학생 관리 계획(안전관리 방안), 강사료 보전 기준,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오류고등학교에서는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표 1] 과 같이 수익자부담경비 사업을 운영하면서 3건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거나 47건에 대하여 사후에 심의를 받는 등 총 50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2023학년도~2025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사업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부적정 내역

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사업 운영 건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건수			
		미심의	사후 심의	사전 심의	계
2023	28건	2건	14건	12건	28건
2024	26건	0건	20건	6건	26건
2025	20건	1건	13건	6건	20건
합계	74건	3건	47건	24건	74건

※ 자료: 오류고등학교 수감자료 재구성

3. 수익자부담경비 정산 및 공개 부적정

가.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에 따르면 수익자부담수입이란 방과후학교활동비·현장체험학습비·졸업앨범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전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해당 사업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추진 내역(소요예산, 수행업체 및 선정방식, 세부집행내역 등)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학부모에게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금액이 소액이어서 일일이 정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으로 전출하거나 학생복지 사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오류고등학교에서는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표 2] 와 같이 방과후학교 운영,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등 총 74개 사업을 수익자부담수입으로 운영하면서 ①집행내역 정산 지연(40건), ②집행내역 미공개(34건), ③집행내역 공개지연(32건)으로 총 106건의 수익자부담경비의 정산과 공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2] 2023학년도~2025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정산 및 공개업무 부적정 내역

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사업 운영 건수	수익자부담경비 정산 및 공개 부적정 건수			
		정산 지연	공개 미실시	공개 지연	계
2023	28건	21건	18건	9건	48건
2024	29건	15건	8건	13건	36건
2025	17건	4건	8건	10건	22건
합계	74건	40건	34건	32건	106건

※ 자료: 오류고등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오류고등학교장은

- ① 앞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1항 제5호, 제6호 및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편람」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수익자부담경비 사업 운영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바라며,
- ②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지침」을 준수하여 수익자부담경비 사업의
집행 내역 정산 및 공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③ 이 건 관련하여 “기관주의” 처분합니다.